

담양군 일부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일부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8. 20.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일부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의사 결정 과정에 다수가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법을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각 조례를 근거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결 방법 개정

- 가부동수일 시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조항 개정 및 삭제
 -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1조)
 -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2조)
 - 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3조)
 - 담양군 농어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
 - 담양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 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제6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0.. ~ 8. 25.(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일부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일부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위원회 의사 결정 방법의 일괄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담양군 계획 조례의 개정)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담양군 농어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농어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담양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7조(자문위원회) ① (생략)	제17조(자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군수가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u>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u>	② ----- ----- ----- ----- <u>단서</u> <u>삭제</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담양군 계획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5조(회의운영) ① · ② (생략)	제65조(회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u>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u>	<u><삭제></u>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표결 결과가 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u> ④ (생략)	제7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단서 삭제></u>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담양군 농어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u>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단서 삭제></u>

제6조(담양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0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u>	----- -----. <u><후단 삭제></u>
---	--------------------------------------

제7조(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회의) ①·② (생략) ③ <u>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u>	제8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